

Ⅲ.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규정 및 특징비교

1. 관련규정

-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시,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, 천재·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충족시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.
-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·신탁에서는 근로자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표 11> 중간정산·중도인출·담보대출 관련규정 비교

| | 중간정산 | 중도인출 | 담보대출 |
|-------|---|--|--|
| 관련 규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 -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전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자주택구입시,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요양시 등으로 한정 - 중도인출에 따른 패널티관련 규정 전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직연금적립금의 50%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허용 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,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,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 |
| 관련 제도 | 퇴직금, 퇴직보험 | DC형, IRA | 모든 퇴직연금 |
| 근거 | 근로기준법 및 근퇴법 제9조 (퇴직금 중간정산사유) | 근퇴법 제11조 (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사유) | 근퇴법 제8조 (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) |

- 또한 퇴직연금제도상의 담보대출 요건은 다소 엄격하여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개인별 적립금의 50%로 제한하고 있으며, 무주택자의 주택구입,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,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.
-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담보대출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, 그 이유로 담보권 설정·실행, 상계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 등을 들 수 있음.

2. 기능비교

- 기업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어 중간정산을 선호하며 근로자 역시 중간정산을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어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긴급자금 동원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.

<표 12> 제도간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기능차이

| 구 분 | 퇴직금제도 | 퇴직연금제도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중간정산 (중도인출) | - 퇴직금 누진효과 상실 -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에 유리한 반면, 노후재원 확보곤란 | - 퇴직연금 누진효과 상실 -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, 노후재원은 유지 |
| 담보대출 | - 퇴직금 누진효과 유지 - 기업에 따라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존재 | - 퇴직연금 누진효과 유지 - 적립금의 50%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가능 |

-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실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 노후생활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며 DC형 퇴직연금에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함.
-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노후재원 자체의 소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 본래의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며,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한 점이 장점임.
- 다만 담보권 설정, 상계,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어 절차와 실행이 복잡하며 실행 단계별로 이해상충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.

<표 13> 중도인출과 담보대출간의 장단점비교

| 구 분 | | 중도인출 | 담보대출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해당제도 | | - DC형만 가능 | - DC형 및 DB형 모두 가능 |
| 특 징 | 장 점 | - 절차와 실행의 편리성 | - 연금본래의 기능유지 |
| | 단 점 | - 적립금 인출로 연금 본래의 기능저해 | -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어 절차와 실행이 복잡 |

3. 해외사례

- 미국은 근로자 이직시 개인퇴직계좌로의 이관을 통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.
- 근로자 이직시 그간의 부여된 수급권의 비율에 따라서 연금 또는 일시금이 정산되나, 이를 개인퇴직계좌에 이관하여 정년 퇴

직시까지 연금으로 계속 적립하고 있음.

-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C 및 IRA제도는 중도인출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59.5세 이하일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10%의 패널티를 부과함.
-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9.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사고가 발생하여 고액의료비를 지출할 경우,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함.

<표 14> 주요국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규정

| 구 분 | 미 국 | 일 본 | 호 주 | 홍 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중도인출 | 제한적 허용 (SEP-IRA등) | 제한적 허용 (DC형) | 제한적 허용 (장애 등) | 제한적 허용 (장애 등) |
| 담보대출 | 일부 허용 | 불허 | 불허 | 불허 |

- 일본은 DC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만 허용하고 있는 반면, 담보대출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-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, 경제적 궁핍, 이민, 정상참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치료, 주택담보대출연체로 인한 강제경매방지, 장례 및 매장비용 등 일정한 사유시에만 중도인출 허용
- 영국의 경우 담보 대출제도가 없으며 스위스는 주택구입과 영구적 국외이주에 한해서 중도인출 허용
- 홍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된 기금은 법정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
- 다만, 60~64세 사이 조기 퇴직할 경우, 사망 혹은 영구장애가 발생하는 경우, 지난 1년간 기여실적이 전혀 없고 적립금이 소

액(5,000 홍콩달러)일 경우 예외 인정

- 이처럼 선진국은 개인퇴직계좌 활성화,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.
-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가입률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시키고 있음.
- 현재 아시아 2개국, 유럽 9개국, 미주 1개국 등 총 11개국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화를 통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임.

<표 15> OECD 회원 30개국 중 강제 퇴직연금제도 운영국가

| 구 분 | 국가명 |
|------------|---|
| 오세아니아(2개국) | 호주, 뉴질랜드 |
| 유럽(9개국) | 덴마크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슬로바키아, 스웨덴, 스위스 |
| 미주(1개국) | 멕시코 |

자료 : Pension at a Glance 2009, OECD.

- 퇴직연금 의무화유형: 사용자기여 의무화(호주, 스위스, 아이슬란드)유형, 근로자기여 의무화(덴마크, 멕시코, 헝가리, 스웨덴)유형,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화(네덜란드)유형 등으로 구분
-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준의무화를 추진중에 있음.

4. 특징 및 시사점

- 선진국이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선택권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기조가 존재하기 때문임.

 -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퇴직금제도내의 중간정산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급여를 임금후불개념이 아닌 사회보장개념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함.

-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간정산제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.

 - 그럼에도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연금가입을 임의선택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문화적 환경 차이 및 그 특수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음.

- 결과적으로 중간정산제, 중도인출제, 담보대출제의 적용기준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안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 - 즉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제도개선이 시급이 요구됨.